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분야별 관광기업 지원대책

2020. 4. 3.

※ 타부처 지원대책의 경우 발표시점별 현행화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 대책별 세부 지원사항은 각 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(본 자료는 주 1회 보완함)



목 차

I . 금융지원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1.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1
2.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의무 유예1
3.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2
4.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융자상환유예2
5. 소상공인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
6. 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 지원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고용지원4
1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4
2. 4대 사회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지원
Ⅲ. 세정지원6
1. 내국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·····6
2.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…··6
3. 관세 납기연장, 당일환급, 관세조사 유예 등7
IV. 보증지원8
1.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 및 우대보증8
2.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보증기한 연장원

목 차

Ⅴ. 경영지원[기타지원]	g
1. 호텔등급평가 유예 및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…	g
2. 관광업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지원	g
3.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	9
4.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추가지원	10
5. 카드사 혜택확대	10
[참 괴 시·도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현횡	11

Ⅰ. 금융 지원

1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

- (대상)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^{*}
- * 국내 및 국외여행업 겸업 등 40업종 (업종정보 홈페이지 참조)
- (지원내용) 기 시행중인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(4,450억원→5,250억원)
 및 조기지원을 위한 인력충원*
 - * 신속한 집행 위해 영업점 인력파견(2.17.~, 10명) 및 보조인력 배치(3.2.~, 50명), 융자집행 주기 축소(3.3.~, 주1회→주2회) 등 기 조치

- <관광기금 일반융자 지원내용>

- (융자금리) 대기업 및 중견기업(2.25%) 중소기업, 공공법인 및 개인(1.5%)
- (지원한도)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 (최대 신청 한도 : 30억원)
- (상환기간)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- (신청절차) 분기별 신청기간 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시업체 지원센터 접수
- \star 2분기 접수기간 종료(\sim 3.30.), 3분기 신청 추가공지 예정
- **(담당기관)** 한국관광협회중앙회 (② 02-2079-2446~7, http://www.ekta.kr/)
 - * 시·도 및 업종별 관광협회를 통해서도 접수가능

2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의무 유예

- o (대상) 관광기금 융자 원금을 상환중이거나,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
- **(지원내용)** 1년간 원금 상환의무 유예 및 만기연장 (약 2천억원 규모)
- * 원금을 상환중인 경우 상환유예,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
- o (신청절차) 既대출 은행(각 취급은행 영업점)에 직접 신청

- 1 -

3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

- (대상)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용 1~8등급 관광사업체
 - * 대기업, 중견기업, 제주트결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
- (지원내용) 사업체 운영비(인건비, 임차료 등) 특별융자(총 1,000억원 규모)
- (융자금리^{*}) 1.0% / (지원한도) 2억원 내 / (상환기관) 3년거치 3년상환
- * 기준금리에서 1.25%p 차감
- **(접수기간)** '20.2.19.(수) ~ '20.11.30.(월)
- **(신청절차)** 신용보증재단 영업점(전국 144개)에 전화로 상담예약 후 방문접수, 이 후 융자금 신청은 '20.12.11.(금)까지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완료해야 함
- (담당기관) 신용보증재단(1588-7365), 한국관광협회중앙회(02-2079-2446~7)
 - *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관할 영업점 문의 요망 (연락처는 11페이지 하단 참조)

4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융자상환유예

- **(대상)** 주민등록상 제주도 내 3개월이상 거주자(개인), 자본금 50억원 미만 이면서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본점 또는 지점등록이 된 업체(법인)
- (특별융자) 「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시업
- (상환유예)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모든 사업자
- (지원내용) 금리(0.75%), 경영안정자금 및 건설·개보수자금 융자
- * 금리는 분기별 변동, 융자한도는 개인 6~12억원 이내, 법인 12~24억원 이내 (업종별, 자금용도별 상이)
- **(접수기간)** 특별융자(2.20.~5.18.), 상환유예(3.2.~5.18.), '20.6.30.이내 융자실행
- **(신청절차)**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에 지원 (선착순)
- * 상환유예는 거래은행과 상의 후 접수 (은행심사결과에 따라 유예여부결정)
- (담당기관)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 ☎ 064-740-6095~7/6084

5 소상공인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

- (대상)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(신용 1~10등급)
- **(지원내용)** 시중은행(신용 1~3등급 대상, 기업은행제외), 기업은행(3~6등급 대상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4~10등급 대상) 세 기관이 분담하여 총 12조원 대출
- (융자금리) 1.5%(세 기관 모두 동일)
- (지원한도) 시중은행 3천만원, 기업은행 1억원, 소진공 2천만원
- (상환기간) 시중은행 1년, 기업은행 최장 8년, 소진공 2년거치 3년상환
- **(접수기간)** 접수 시작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
-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: '20.4.1.부터 접수
-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: '20.4.1.부터 접수 (4.6. 심사시작)
- 소진공 경영안전자금 : '20.3.25.(수) ~ 예산소진 시 (3.25.~31. : 시범운영)
- (신청절차) 각 담당기관에 문의 후 방문
- **(담당기관)** 시중은행, 기업은행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* 소성공인시장진흥공단 (※ 042-363-7210/7230)

6 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 지원

- **(대상)** 저신용(6등급 이하, 무등급포함)자 및 저소득층(차상위계층 이하), 근 로장려금 신청대상자
- **(지원내용)** 금리4.5%이내, 최장 5년, 2천만원 한도 (총 4,400억원 규모)

구분	창업자금	운영자금	시설개선자금	긴급생계자금
대출한도	7천만원	2천만원	2천만원	1천만원
대출기간	6년이내	5.5년이내	5.5년이내	5년이내
금리	4.5%	4.5%	4.5%	4.5%

- * 긴급생계자금은 기존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자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
- **(담당기관)** 서민금융진흥원 (☎1397)

Ⅱ. 고용 지원

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

- **(지원대상)**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^{*}한 사업주^{**} 매출액 15%감소 요건을 한시적으로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완화
- **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, 숙박업, 보건업(병·의원), 그 외 지방관서장이 코로나 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
- **(지원규모)** 약 5,004억원 (지원금 일시상향)
- (지원조건) 총 근로시간의 20% 이상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

종류	지원조건	지원수준
휴업	근로시간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/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 를 행하고,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	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 등의 3/4 (대기업 2/3) 지원
휴직	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	*1일 6.6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)

○ (지원내용) 휴업·휴직 수당 지원비율 한시적 상형(20.21.~7.31.), 특별고용업종 지정

종류	일반업종 상향 (2.1~7.31)	특별고용지원업종 (3.16~9.15)
중소기업	2/3(66.7%) → 3/4(75%)	9/10(90%)
대기업	1/2(50%) → 2/3(66.7%)	2/3(66.7%)~3/4(75%)

- * 여행업 관광숙박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(3.16.)
- (신청절차) 지역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
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	→	고용유지조치 실시		지원금 신청 (매월)		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
사업주 → 고용센터	7	사업주	7	사업주 → 고용센터	_	고용센터

○ (담당부처)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(상담센터 ☎1350)

2

4대 사회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지원

- (지원대상) 코로나19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·기업
- (유형별 지원방안) 총괄표 참조 (납부유예의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)

	건강보험	국민연금	고용보험	산재보험	
	3월 부과분 납부기한(~4.10.)				
		• 전체 기업자 중 희망자 (소득감소 요건 충족)	• 30인미만 사업장	• 30인미만 사업장 + 1인 자영업자 + 특고	
납부		• 3개월 납부예외 확대	• 3개월 납부기한 연장	• 3개월 납부기한 연장	
유예 (신청 시)	-	• 3~5월 부과분 (~4.15.까지 신청 시) * 3월 부과분 既납부시 5월 환급 * 4~6월분은 ~5.15일 까지 신청 시 유예 가능	• 3~5월 부과분 (~5.10.까지 신청 시) * 단 旣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		
	• 보험료 하위20~40% * 하위20% 旣감면50%			• 30인미만 사업장 + 1인 자영업자 + 특고	
감면	• 3개월 30% 감면	-	-	• 6개월 30% 감면	
	• 3~5월 부과분 *3월 감면분은 고지 서 旣발송→4월분 고 지서에 합산하여 감면			• 3~8월 부과분 *3월 감면분은 고지 서 旣발송→4월분 고 지서에 합산하여 감면	
담당 부처	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	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	
문의	국민건강보험공단 (☎1577-1000)	국민연금관리공단 (恋1355)	고용노동부상담센터 (添1350)	근로복지공단 (☎1588-0075)	
(누리집)	https://www.nhis.or.kr	https://www.nps.or.kr/	https://www.ei.go.kr	https://www.kcomwel.or.kr	

Ⅲ. 세정 지원 [내국세, 지방세, 관세]

1 내국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- **(지원대상)** 자영업자,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*
 - *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·관광·여행·공연·음식·숙박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- (지원내용)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- (신고·납부기한 연장) 법인세(3월 확정신고), 부가가치세(4월 예정신고) 등 신고·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
- (징수·체납처분 유예)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,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
- (세무조사 연기)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중단, 세무조사가 사전통지·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
- (전담대응반 운영) 본청 및 전국 세무서에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 지원 전담대응반」을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 지원
- **(시행시기)** 즉시 시행
- (담당부처)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(☞국번없이 126, 3번→2번)

2 지방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
- **(지원대상)**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(의료, 여행, 공연, 유통, 숙박, 음식업 등 / 유흥업소 제외)
- (지원내용) 신고·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
 - ※ 지방세 감면의 경우 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 거쳐 시행
- (신고·납부 기한 연장) 6개월 이내,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
- *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종업원분 등
- (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) 6개월 이내,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
- (세무조사 유예)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
- (시행시기) 행안부 → 지자체 지침 통보(2.5일)
- (담당부처)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관할 지자체 세정과

3 관세 납기연장, 당일환급, 관세조사 유예 등

- ㅇ (지원대상) 중국內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
- (지원내용)
- (납기연장·분할납부)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·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內 무담보 지원 (2.6.~)
- (당일 관세환급)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건은 P/L(Paperless)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·지급 (2.6.~)
- (관세조사 등 유예)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 까지 유예,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시 연기 (2.6.~)
- (애로해소센터 운영)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 지원 시행 (즉시 시행)
- * 인천·서울·부산·대구·광주·평택에 「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」설치
- (**담당부처)** 관세청 심사정책과 (☎ 042-481-7863, 국번없이 125, 20번→2번)

Ⅳ. 보증 지원

1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 및 우대보증

- (대상)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
- **(지원내용)** 담보가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소 상공인・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함

	소상공인	피해기업	중소기업
지원한도	7천만원(5년 이내),	3억원	신용보증기금 문의
보증비율	상향조정(85%→100%)	상향조정(85%→95%)	상향조정(85%→95%)
보증료율	0.8%	1.0%	기존 보증료율 대비 0.2%p 우대
기타 지원			심사 간소화
문의	지역 신용보증재단 (☎1588-7365)	기술보증기금 (☎1544-1120)	신용보증기금 (☎1588-6565)

2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보증기한 연장

- o (대상)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받은 기업
- **(지원내용)**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대출보증기한 연장
- (지역신보) '20.6.30. 이전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의 보증기한 연장(1년)
- (신용보증기금) '20.9.30.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대출보증 전액 만기연장
- (신청절차)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 및 신청 / 신용보증기금 전화 신청 <전국 주요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연락처>

지역	전 화 번 호	지역	전 화 번 호	지역	전 화 번 호
서울	1577-6119	부산	051-860-6600	강원	033-260-0001
대구	053-560-6300	인천	1577-3790	충남	041-530-3800
광주	062-950-0011	대전	042-380-3800	전남	061-729-0600
울산	052-289-2300	경기	1577-5900	경남	1644-2900
충북	043-249-5700	전북	063-230-3333	경북	054-474-7100

* 신용보증기금 (愛1588-6565)

∨. 경영지원(기타 지원사항)

1 호텔등급평가 유예 및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

- o (대상) 호텔업종 및 유원시설업종
- **(지원내용)** 호텔등급평가 심사유예 및 수수료 등 감면
- (심사유예)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호텔등급평기를 유예 (기존 등급 유효기간 연장)
- * 매 3년마다 등급심사 필요 → '20년 약 352개 업체 대상 (총 심사비용 약 6.2억원)
- (수수료 등 감면)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 50% 감면* 및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임대료 감면 독려
- * 약 25백개 기구에 확인검사(1~20만원) 및 안전성검사(22~60만원) 필요
- **(담당부처)**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

2 관광업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사자 교육지원

- (대상) 여행업계 및 마이스업계
- (지원내용) 업계종사자 역량강화 및 실무교육 제공
- (여행업) 휴업·휴직중인 여행업계 종사자 맞춤형 교육*추진 (7.5천명)
- * 분야별 직무 역량강화, 소규모 여행사 맞춤형 전문 교육 등
- (마이스)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실무교육 지원 (200명)
- * 3년 미만 경력자, 경력단절자, 마이스교육 수료자, 컨벤션기획 자격증 소지자 등 대상
- **(신청절차)** 추후 확정 시 별도 안내
- (담당부처)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(☎ 044-203-2879~2880)

3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

- (대상) 관광벤처기업, 관광분야 유관기업 등 관광관련 사업자
- (지원내용) 코로나19 관련 부처별 지원대책 안내 및 경영상 애로사항 접수, 기존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 중 지원 가능한 사업 상세 안내
- **(담당기관)**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(02-729-9454/9494)

4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추가지원

- **(대상)** 공항상업시설* 입주기업
- * 면세점, 음식점, 은행, 환전소, 편의점, 급유, 기내식 등 포함
- (지원내용)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・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50%로 상향(25%→50%)하고, 대・중견기업 임대료 20% 신규 감면
- (지원기간)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%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 한시적용 (3~8월, 3월분 소급)
- (담당기관) 인천공항공사(☎ 1577-2600), 한국공항공사(☎ 1661-2626)

5 카드사 혜택 확대

- (대상) 코로나19 피해 우려 영세·중소가맹점 (연매출 5억원 이하)
- (지원내용)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(카드샤별 상이)
- * (C사)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,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,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
- * (D사)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, 소비영향 분석 지원,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
- (신청절차) 각 카드사 문의 (신한, 국민, 삼성, 현대, 비씨, 하나, 우리, 롯데)
- * 신한카드(1544-0887), 국민카드(1588-1688), 삼성카드(1588-8700), 현대카드(1577-6000), 비씨카드 (1588-4000), 하나카드(1800-1111), 우리카드(1588-9955), 롯데카드(1588-8100)

참고

시·도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 현황

구분	추진 내용	피해신고센터
서울	→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민생경제대책반 구성·운영 →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5,000억원) 및 특례보증(5,000억원) 지원 →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(2.14.)	서울 기업지원센터 (02-2133-3119)
부산	 ● 민·관 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 설치·운영 ●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(4,000억원) 및 피해기업(소상공인) 특례보증(150억원) 지원 ● 피해기업 추가자금(1,000억원) 긴급 지원 및 피해극복을 위한 자금 기탁(BNK, 100억원) 	부산경제진흥원 피해지원센터 (051-660-1713~6) 부산상공회의소 피해지원센터 (051-990-7063~6)
대구	→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대책본부 구성.운영 →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200억원) 및 특별보증(200억원) 지원 →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추진	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(053-803-1119)
인천	 ・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반 및 경제대책 상황실 구성·운영 ・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(650억원) 및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(250억원) 지원 ・ 피해 업체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 	경제대책상황실 (032-440-8242~3)
광주	· 코로나19 경제대책 상황실 설치·운영 ·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2,300억원) 및 특례보증(732억원) 지원 ·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발표(2.12.)	코로나19 지원제도 종합안내 원스톱센터 (062-960-2624)
대전	 고로나19 관련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(피해접수창구 및 소상공인 지원협약체 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1,420억원) 지원 피해기업 구매조건 생산자금 100억원 특별배정 및 피해 기업 세제 지원 등 	대전경제통상진흥원 피해접수창구 (042-380-3035)
울산	 자동차산업 대응지원센터 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1,200억원) 지원 지방세 지원, 울산페이 이용 활성화 추진(결제금액 3% 포인트추가지급) 	지역경제·산업 대응센터 (052-229-2720) 자동차업종 대응지원센터 (052-219-6623)
세종	 ■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250억원) 확보 ● 코로나19 대응 예비비 편성(154백만원) ● 지방세 지원(신고·납부 기한 연장, 징수·체납처분 유예 등) 	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(044-300-4143)

구분	추진 내용	피해신고센터
경기	•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경제 TF 설치·운영 •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2,000억원) 및 특례보증(8,500억원) 지원 •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(2.6)	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피해신고센터 (소상공인) (1600-8001)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피해신고센터 (중소기업) (031-259-6119)
강원	→ 민·관 합동 비상경제 대책본부 구성·운영 →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700억원) 지원 → 소비촉진 및 경기활성화 특별대책 수립(2.13.)	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 (033-249-2734)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 (033-249-2757)
충북	· 경제상황점검 및 대응 TF 구성·운영 ·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50억원) 및 특례보증(50억원) 지원 ·지방세 지원,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및 할인 확대 추진	기업 피해 신고센터 (043-220-3463)
충남	→ 지역경제 대응 TF팀 구성·운영 →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6,624억원) 지원 →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(2.13.)	충남경제진흥원 기업애로접수창구 (041-539-4592)
전북	 ∙ 전북 경제상황대응 TF 구성·운영 •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1,000억원) 및 특례보증(200억원) 지원 •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,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및 할인율 확대 추진 	기업·소상공인 피해통합신고센터 (063-711-2012)
전남	·경제상황 대응 T/F 구성·운영 ·피해 중소기업.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500억원) 및 특례보증(400억원) 지원 ·지방세 지원, 시.군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	중소기업·소상공인 애로 통합신고센터 (061-288-3833) 중소기업 (061-729-0651) 소상공인
경북	 코로나19 대응 경북 경제 T/F단 구성·운영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(당초 300억원 → 1,200억원 증액) 수출입 피해기업 마케팅·신규사장 개척 등 긴급예산 10억원 지원 	기업 피해신고센터 (054-880-2671) (054-880-2674)
경남	 경상남도 코로나19 경제상황대응반 및 통합신고센터 운영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500억원) 및 특례보증(200억원) 지원 수출/업수출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4개사업 318억원 조기 사행 	경상남도 기업·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(1899-1745)
제주	 ・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「범도민 위기 극복 협의체」출범(2.13.) ・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(9,000억원) 및 특례보증(1,000억원) 지원 ・ 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진흥기금 5,700억원 특별 지원 (특별융자 3,000억원 상환유예 2,700억원) 	기업애로 신고센터 (064-710-2522) 수출기업애로 신고센터 (064-757-2811)